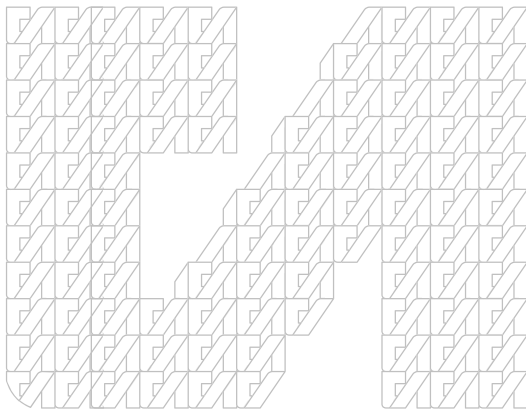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분석 및 도입 방안

임성복



연구책임

• 임성복 /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 2019-30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분석 및 도입 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58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2장 지역화폐의 이론적 검토	11
1. 지역화폐의 개념 및 특징	11
2.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15
3. 지역화폐의 내성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	19
4. 지역화폐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4
3장 지역화폐 발행 사례조사	31
1.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	31
2.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46
3. 광주상생카드	53
4. 대덕구: 대덕e로움	59
4장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65
1. 기본방향	65
2. 도입 방안	67
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75
1. 요약	75
2. 정책제언	84
참고문헌	87
부 록	88

표 차례

〈표 2-1〉 지역화폐 형태별 장단점 비교	18
〈표 2-2〉 대전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체수	24
〈표 2-3〉 전국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	25
〈표 3-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정 현황	32
〈표 3-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 변화	33
〈표 3-3〉 광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34
〈표 3-4〉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1/3)	35
〈표 3-5〉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2/3)	36
〈표 3-6〉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3/3)	37
〈표 3-7〉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38
〈표 3-8〉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39
〈표 3-9〉 충청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40
〈표 3-10〉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41
〈표 3-11〉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42
〈표 3-12〉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43
〈표 3-13〉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44
〈표 3-14〉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47
〈표 3-15〉 인천광역시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48
〈표 3-16〉 광주광역시: 광주상생카드 개요	54
〈표 4-1〉 대전광역시 ‘가칭’ 대전사랑카드’ 도입 방안(안)	6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2-1〉 지역화폐의 유형	17
〈그림 2-2〉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과정	21
〈그림 2-3〉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조	23
〈그림 3-1〉 광역·기초 지자체 발행 및 도입 예정 지역화폐와 발행액 현황(2019) ..	32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장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수연, 2014)
- 기존 화폐는 공간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 자본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등과 함께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민선 7기(2018.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광역지자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선거공약으로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음
- 아울러 2018년말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계획을 발표
 -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내 기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말 기준으로 66개 지자체에서 3,700억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116개 지자체 1조 6,714억원 규모로 확대
- 그러나 기 도입한 8개 지자체(광주남구, 태백, 화천, 경주, 김천, 안동, 군위, 보성)의 경우 2019년부터는 발행계획이 없는 상태로, 향후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도입에 대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상품권 발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의 지원 하에 지금까지 국내의 여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체 분석 결과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성과가 병존하는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화폐의 개념 및 동향 등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을 탐색하고,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세부적으로는 대전지역이 사전에 이러한 지역화폐 도입시 예상되는 각종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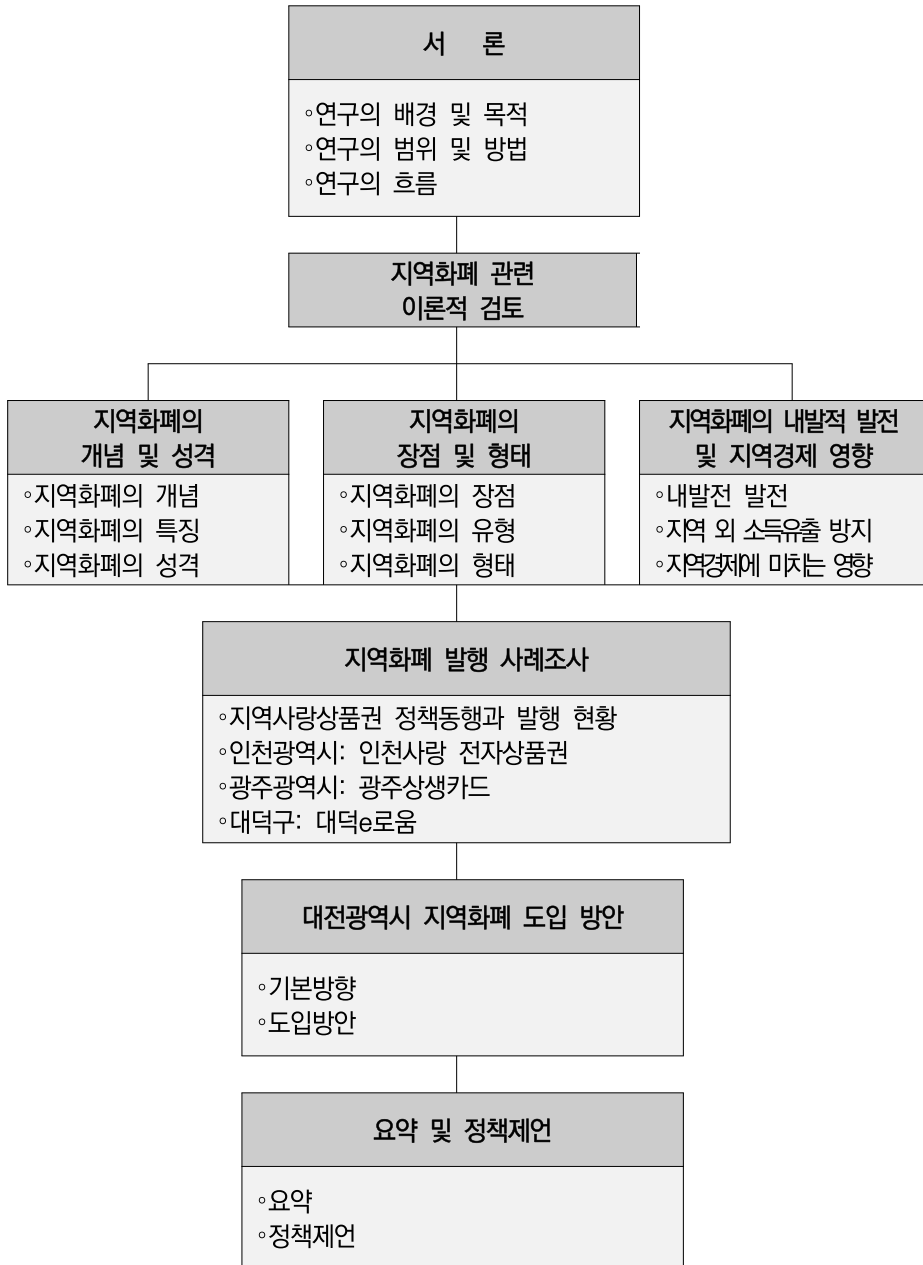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화폐 관련 이론적 검토와 지역화폐 발행 사례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 제시 등임
- 지역화폐 발생 사례조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인 대덕구의 대덕e로움을 검토코자 함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진행방향과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헌검토는 지역화폐의 개념 및 성격,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지역화폐의 내발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을 정리하였음
- 사례조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과 인천사랑 전자장상품권과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인 대덕구의 대덕e로움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 전체적인 연구진행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문가 콜로키움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 토론 및 다양한 자문 내용을 수렴하였음

- 본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과 주요 내용 등을 기술하였음
 - 제2장은 이론적 검토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개념 및 성격,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지역화폐의 내발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을 검토하였음
 - 제3장은 지역화폐 발행 사례조사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행과 발행 현황,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광주상생카드, 대덕e로움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
 - 제4장은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으로 기본방향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대전시 지역화폐 발생,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지역화폐 관련 이론적 검토

1. 지역화폐의 개념 및 성격
2.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3. 지역화폐의 내발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

2장

2장 지역화폐 관련 이론적 검토

1. 지역화폐의 개념 및 특징

1) 지역화폐의 개념

-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며,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함(이수연, 2014)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유통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통칭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표현과 형태가 존재
 - 실제로 지역화폐라는 용어는 그 목적에 따라 '지역화폐(local currency)',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imentary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
- 또한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특정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로서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결제수단의 하나로 사용됨
- 이와 같이 지역화폐는 일정한 지역에 특정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거래·정산되는 지불수단임
-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히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백화점, 기업형SSM,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
- 따라서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화폐로, 지역 내의 부(Wealth)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내수 증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2) 지역화폐의 특징

-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화폐의 특징을 법정화폐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지역 안에서만 유통이 되는 점이며, 유통과정에서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며, 발행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및 구성체들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비추어 볼 때, 지역화폐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폐는 하나의 '제도'이자 동시에 '지역화폐 운동'으로 간주됨(조재욱, 2013)
- 이러한 지역화폐는 운영 단체가 관리하는 구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플러스 포인트가 부여되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스템임
- 지역화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된 돈의 발행을 공동체에 참여한 개인에게 위임하고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화폐가 발행됨
- 국민화폐와 지역화폐의 본질적 차이는 유통이 전국적인가 일정 지역인가 라는 유통범위가 아니라 화폐의 성격, 즉 전자가 의미하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한 시장의 교환과 후자가 포함하고 있는 상호부조, 공동체의 신뢰에 토대가 된 교환의 성격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김민정, 2013)

3) 지역화폐의 성격

□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화폐와 경합하지 않음

- 지역화폐는 법정통화 발행과 공급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역순환 경제, 생태경제 등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역화폐 운동은 법정통화 사용의 최소화를 지향함
- 따라서 한정된 공간인 지역화폐 공동체 내부에서만 유효한 특징을 나타냄
- 특정 지역주민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병용은 불가피함

□ 지역화폐는 회원제 운영

- 지역화폐 사용을 약속한 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발생함
- 가장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폐, 카드와 같이 현물형태의 화폐는 발행비용, 전자거래는 시스템 구축 비용, 카드의 경우 온·오프라인 결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등이 추가됨

□ 지역화폐는 화폐로서의 범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공동체 외부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강제 통용력이 없어 회원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음

□ 지역화폐의 형태나 발행방식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로 받은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됨

-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와 법인과외 거래가 모두 과세대상인 것처럼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됨
- 일반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과세기준이 확립 되어 있는 것처럼 조세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지역통화 사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과세 및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과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지역화폐가 법정화폐와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며, 영국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완화폐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신종 탈세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있음

□ 지역화폐는 가치산정이 어려움

-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보완화폐적 지위를 가진 지역화폐 역시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 불태환 명목화폐에 속하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법정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화폐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수량, 즉 화폐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고, 법정화폐의 구매력은 화폐를 발행하는 해당 국가 정부의 지불약속에 의해 보증되는 반면, 지역화폐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는 구매력을 표현하는 가치척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발행기관의 권위가 그 구매력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임
- 화폐로서의 결정적 약점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시키는 것임

2.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1) 지역화폐의 장점

□ 가구 소득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입장에서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일어남.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상품권을 판매한 양구군의 경우 주민의 소비 대체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화폐 소비 주체 간 협동 결성(공동체 활성화)

- 인식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구성원에게 공동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웃들 간의 친밀함을 높여주며, 본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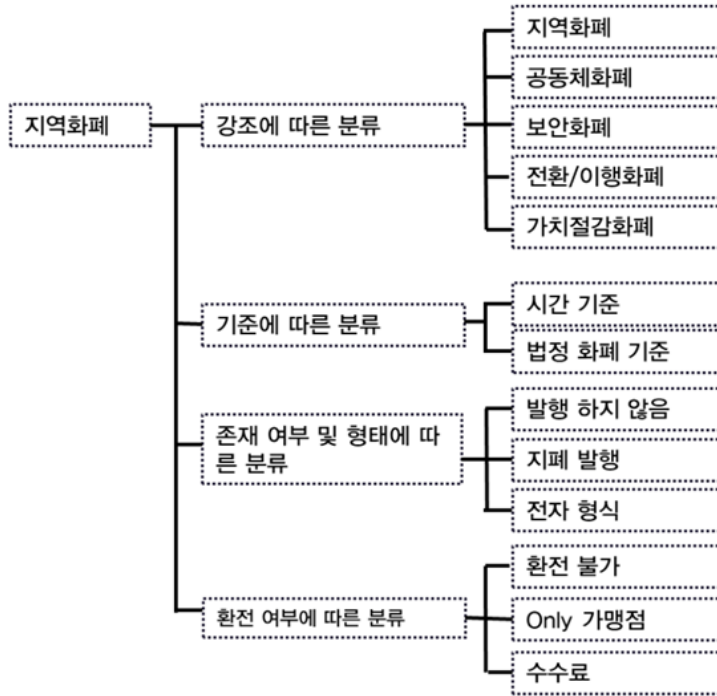
□ 내생적인 지역발전 강화

- 지역화폐는 외부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며, 이에 반해서 외부 자금의 유입 및 유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므로 외부 자기에 독립적이고 지역경제에 내생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2) 지역화폐의 유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와 운영방식은 단일한 범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며 지역화폐 유형 구분과 범주화 방식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냄
- 지역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형태적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지폐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발행형태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최준규, 2018)
- 위에서 제시된 지역화폐의 특징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화폐를 만들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화폐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성공적인 지역화폐의 발행이 가능함
- 지역화폐가 강조하는 특징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통용을 강조하는 지역화폐,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 화폐, 법정화폐의 보완적인 기능의 보완화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경제체제를 강조하는 전환/이행화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 절감화폐가 있음
- 화폐의 존재 여부 및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으며, 화폐를 아예 발행하지 않고 계좌 형식으로 거래 내역만 주고받거나, 단순히 노동 교환 형식으로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화폐도 존재함
- 이에 반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품권 형식으로 발행을 하는 지역화폐의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부각되면서 전자형식의 지역화폐 발행이 대세가 되고 있음

〈그림 2-1〉 지역화폐의 유형



자료 : 이수연(201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3) 지역화폐의 형태

- 지역화폐의 형태는 크게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류형 보다 카드형과 모바일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음

〈표 2-1〉 지역화폐 형태별 장단점 비교

구분	카드형(체크, 충전)	지류형	모바일형
주요 내용	은행권과 연계한 전자·자기적 형태 상품권 제작	조폐공사 연계 통합계약형 지류상품권 제작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QR, 바코드 등 탑재)
타 사례	2018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카드 [신한(체크)카드] ※ 2019(인양, 부천, 광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농협 판매환전대행 다수] ※ 포항시 외 60개 지자체	◦인천 카드(ic카드) ◦모바일 상품권 ※ 인천시
장점	◦정책수당 지급 용이 ◦별도기맹점 모집없이 사용 ◦부정유통 우려 감소 ◦데이터 관리(분석) 용이 ◦관리 운영비 감소 ◦전 연령층 선호도 높음 ◦교통카드 등 부과가능 가능	◦홍보 및 정착 용이 ◦중장년 이상 사용용이 ◦결제 말기 없는 소상공인, 시장, 노점상도 사용가능	◦정책수당 지급 용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소 ◦청년층 선호 ◦행안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기조에 맞춰 진행 가능 ◦부정유통 우려 감소
단점	◦은행 직접방문 카드신청 ◦앱을 통해 카드 신청 가능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발생	◦정책수당 지급 불편 ◦환전·판매대행 수수료 발생 ◦실물 소지에 따른 사용불편 ◦부정유통 우려	◦어르신 이용 불편 ◦보급 상용화까지 시간 소요 ◦소비자 및 가맹점 확보 어려움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소요 예산 (추산)	상품권 발행료, 할인료 외 카드수수료 보전비용 발생	상품권 발행료, 할인료 외 지류형 상품권 제작·판매·환전 수수료 발생	상품권 발행료, 할인료 외 모바일 플랫폼 임대비용 발생
	◦카드수수료(0.5~1.7%) ◦관리시스템(1식) ◦홍보 및 지정서 제작 등	◦할인판매 보전금 (6~10%) ◦판매대행 수수료(1.2%) ◦판매환전수수료(0.5%) ◦상품권제작비(장당 95원) ◦관리시스템(1식) ◦홍보 및 지정서 제작 등	2020년 상용화 예정 (행안부와 조폐공사가 36억 투입 플랫폼을 개발 후 지자체가 도입을 희망할 경우 보급)
	2.5억	27억	플랫폼 임대비용 (미정)

3. 지역화폐의 내생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

1) 내생적 발전, 지역의 자원 활용과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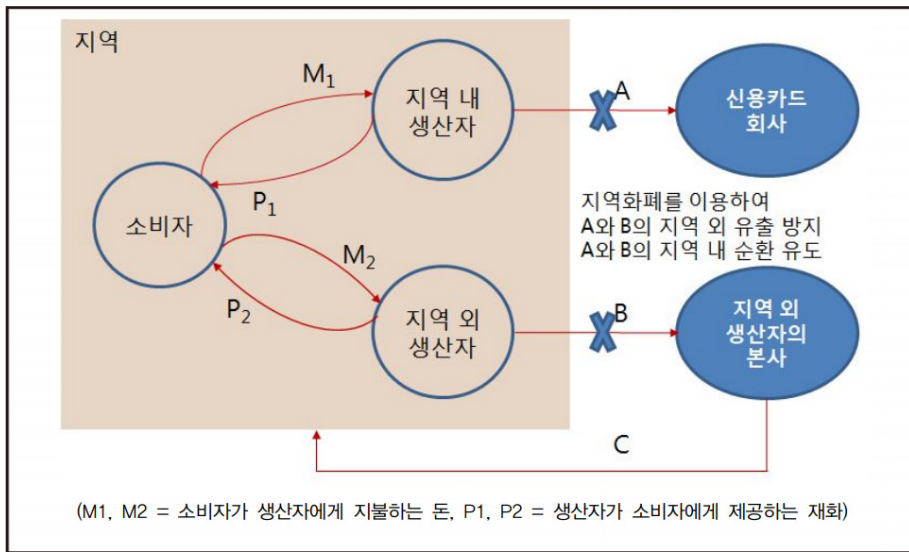
- 내생적 발전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내부에서 찾는다는 의미로, 단순히 자원 출처의 내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지역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이라는 피상적, 양적 목표보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함
- 내생적 발전에 의하면 외부 기업 유치보다는 지역내 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복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내 기업끼리 상호거래를 하면 일과 돈이 돌아서, 고용도 늘고 세수입도 늘어나며, 늘어난 세수입으로 지역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즉, 내생적 발전은 지역내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경제순환을 만들고 지역내 재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임
- 지역화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첫째,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주체들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함
 -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보다 더 지역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함
- 따라서 지역화폐의 운영이 지역 내 경제주체, 지역 내 교환,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2)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거래에 사회적 관계를 붙여넣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지역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임
-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나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와 유통, 생산의 증가로 이어짐
-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돈이 지역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지역 안에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임
-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체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역 밖으로 나가던 돈들이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는 지역의 영세한 경제주체들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과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보다 더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함
- 즉, 지역 내 경제주체, 지역 내 교환,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봄(이수연b, 2014)
-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과정으로는 일단 지역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임
-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지역화폐로 구매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나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와 유통, 생산의 증가로 이어짐

- 이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돈이 지역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지역 안에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체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역 밖으로 나가던 돈들이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2〉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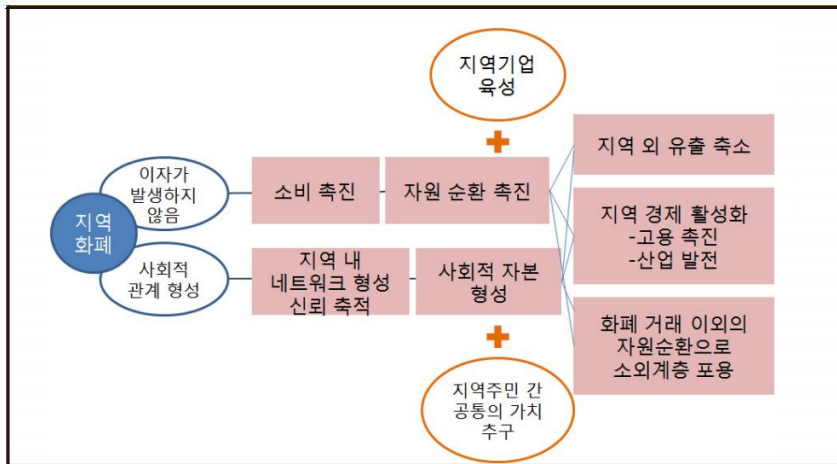
자료 : 이수연b(201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3)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화폐 발행, 운영의 목적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상점가, 영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 이용 수요를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사업자 등으로 전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신뢰감이 형성되며,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비를 지향함
-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친환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산물을 소비를 하게 되며, 외지 유통업체가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등의 지역화폐만이 가지는 의미가 잘 공유될수록 효과는 더욱 높아짐
-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할 수 있고, 지역 내 소외된 계층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줌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및 자원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 외 유출 축소와 지역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신뢰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화폐 거래 이외의 자원순환으로 소외계층 포용 등 지역주민 간 공통의 가치 추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유도
- 이에 반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창출된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수요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유발시키게 되고,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따라 발생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지역 내 소비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발시키게 됨

- 이러한 효과를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감소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계기로 지역 내 기업의 참여는 물론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신규 기업의 창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한성일, 2013)

〈그림 2-3〉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조



자료 : 이수연(201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4. 지역화폐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지역경제에 있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실태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는 2011년 53,137개소에서 2016년 78,359개소로 불과 5년 사이에 4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급속한 증가는 관련 산업, 업종 내의 경쟁 과열과 사업장의 매출액 및 소득 감소, 영업 유지 곤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2-2〉 대전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체수

구 분	2011년	2016년	비 고
대전광역시	53,137개	78,359개	47.5% 증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3년,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 이러한 현상은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으로 이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매출액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업체는 70.9%, 영업이익 감소 업체는 72.1%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음

〈표 2-3〉 전국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

구 분	증가	감소	변동없음	합계
매출액	15.5%	70.9%	13.7%	100.0%
영업이익	14.3%	72.1%	13.5%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 매출감소의 원인은 상권 쇠퇴 46.2%, 경쟁 업체 출현 24.3%로 조사되었고,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상권 쇠퇴 40.2%, 경쟁 심화 37.5%, 원부자재 가격 상승 28.8%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체의 매출감소 원인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의 주 요인인 상권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태계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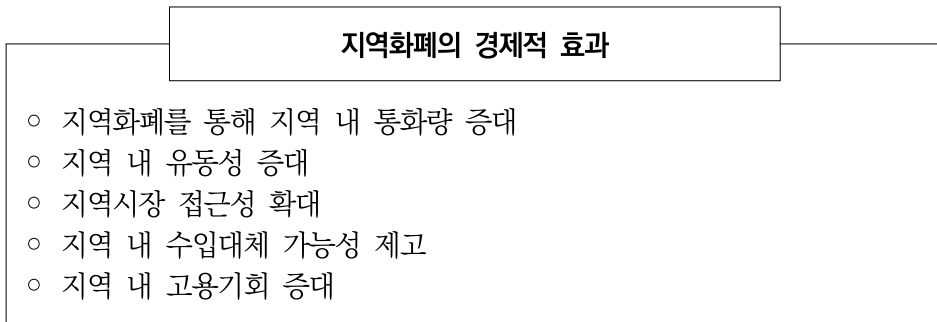
2)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매출 증가, 소득 증대의 필요성 대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소득 증대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통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임
- 지역화폐의 발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외부의 각종 대형 유통업체, 전문 대리점, 프랜차이즈점과의 경쟁 관계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축소, 업체 경쟁력 저하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3)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적 측면: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 (기존) 지역 내에서 발행한 주요 자본소득의 많은 비중이 유통업체 본사가 있는 외부지역 유출,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 약화
- (지역화폐) 지역내 소비가 증가하면 골목상권 매출 증가
 -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어 화폐의 재순환이 지역내에서 반복됨으로써, 생산·판매·소비 등 지역 골목상권의 경제주체로의 신규 고용 창출 및 자금의 선순환에 기여
 - 골목상권·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함



□ 공동체 측면: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기능 강화

- 지역화폐의 공급은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효과 탄생시킴
- 지역주민의 정치경제적 자율성과 자립 역량을 강화

□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타지역의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의 발행 결과 2016년 자영업자 매출이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 화폐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7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역 외 소비감소 효과가 169억원 규모로 분석되는데 이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45.7%에 해당하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는 391명으로 분석됨
- 이를 이후의 장에서 제시한 초기 단계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2,5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지역 외 소비감소 효과는 1,125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2,625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자영업자의 매출은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화폐 발행 사례조사

1.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생 현황
2.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3. 광주상생카드
4. 대덕e로움

3장 지역화폐 발행 사례조사

1.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

1) 정책동향 : (국정과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상품권의 지자체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별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 지역 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와 유통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지원규모) '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발행 규모의 4%를 지원할 예정
 - *고용위기지역 : 국비 4%, 그 외 지역 : 국비 2%, 특별교부세 2%
 - (법률 제정 추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9년 상반기)
 - (모바일 상품권 도입)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로 지류 상품권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류 상품권의 지역제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 중임

2)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현황

- '19년 3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총 69개(광역 2, 기초 67개이며, '19년 도입 예정 지자체는 71개로 총 발행 지자체는 14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2019)

〈표 3-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정 현황

구분	발행 중	2019년 예정
부산	-	동구
인천	인천광역시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대전	-	대덕구
울산	-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주시, 청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보령시
전북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익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영주시, 예천군, 영천군, 봉화군, 경산시
경남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 밀양시, 진주시, 통영시, 창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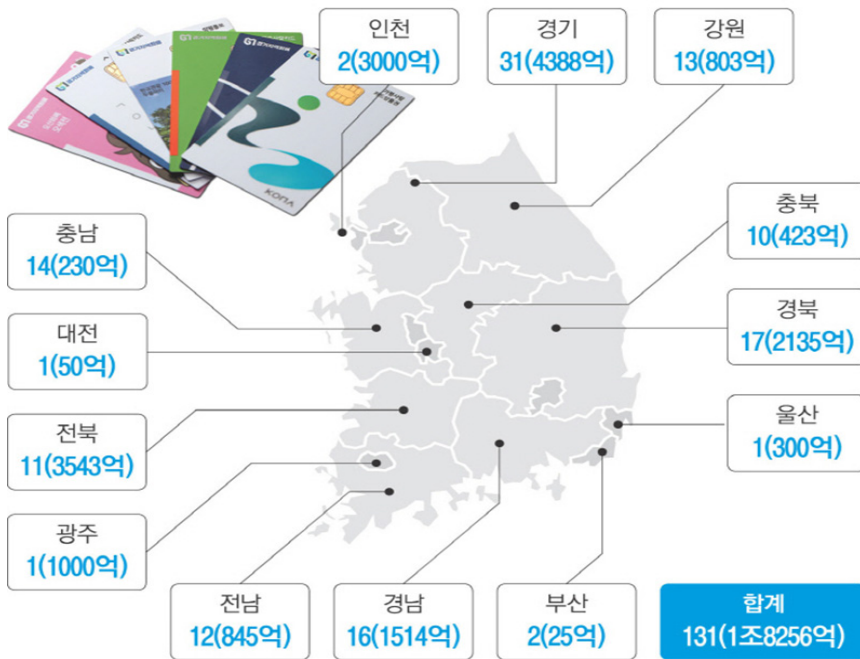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19)

- 전국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모두 69여곳으로, 2019년 말 131곳 예상
 -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 발행
- 지역화폐 발행 금액 면에서도 2016년 1,168억원, 2017년 3,063억원, 2018년 3,712억원, 2019년 1조8,256억원으로 크게 증가 추세

〈표 3-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정)
금액	1,168	3,063	3,712억	18,256



〈그림 3-1〉 광역·기초 지자체 발행 및 도입 예정 지역화폐와 발행액 현황(2019)

자료 : 행정안전부(2019)

3)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광역자치단체

-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으로 광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부산 동구, 인천, 광주, 대전 대덕구, 울산, 세종시가 발행·운영하고 있음

〈표 3-3〉 광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부산 동구	-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9.4.예정)	-	2,500
인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	18.7.31.	300,000
광주	광주상생카드	광주광역시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3.예정)	19.3. (예정)	100,000
대전 대덕구	(가칭)대덕사랑상품권 ※향후시민공모통해 변경예정	대덕구	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 운영조례('19.2.)	19.7.5.	5,000
울산	울산사랑상품권	울산시	울산사랑상품권발행및 운영조례(19.5.예정)	19	30,000
세종	세종사랑상품권	세종시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 ('19. 하반기 예정)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3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발행액 규모가 1,116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4〉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1/3)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수원	명칭 공모 중	수원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관한조례 ('19.3.예정)	2005.7.	28,000
용인	용인 와이페이	용인시	경기용인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18.12.14)	2019.4.	3,000
성남	성남사랑상품권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08.11.)	2006.12.	111,600
부천	부천페이	부천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18.12.31.)	2019.4.	25,000
안산	안산사랑상품권	안산시	안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2018.2.28.)	2019.4.	21,167
화성	행복화성지역화폐	화성시	경기도행복화성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2019.4.	12,900
안양	안양사랑상품권	안양시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개정:'19.3.예정)	2018.1.	21,000
평택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평택시	평택시평택사랑상품권관리및 운영조례 ('18.3.23.)	2019.01.	15,250
시흥	시루	시흥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5.3.)	2018.9.	30,000
김포	김포시지역화폐	김포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9.2.)	2019.4.	11,000
광명	광명지역화폐	광명시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9.3.예정)	2019.4.	7,600
광주	경기광주사랑카드	광주시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9.3.예정)	2019.4.	10,110
군포	명칭 공모중	군포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019.4.	9,774
이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 ('18.12.31.)	2019.4.	8,000

〈표 3-5〉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2/3)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오산	오산지역화폐	오산시	오산시오산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18.12.26)	2019.4.	5,800
하남	하남사랑상품권	하남시	하남시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19.3.예정)	2019.4.	7,700
안성	안성사랑카드	안성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18.12.31.)	2019.4.	13,850
의왕	의왕사랑 상품권	의왕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18.10.10.)	2019.1.	5,700
여주	여주사랑카드	여주시	경기여주사랑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19.2.)	2019.4.	4,539
양평	양평통보	양평군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19.3.예정)	2019.4.	6,000
과천	과천토리	과천시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18.12.31.)	2019.4.	5,000
고양	고양페이	고양시	고양시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조례 ('19.3.예정)	2019.4.	20,240
남양주	남양주지역화폐	남양주시	남양주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 (19.3.예정)	2019.4.	14,400
의정부	의정부 사랑지역화폐(가칭)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사랑지역화폐발행및 운영조례('19.3.예정)	2019.4.	11,700
파주	공모심사증	파주시	파주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 (19.3예정.)	2019.4.	7,960
양주	양주사랑상품권	양주시	양주시양주사랑상품권발행및 운영조례(18.7.31.)	2019.4.	5,900
구리	구리사랑상품권	구리시	구리시구리사랑상품권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19.3.예정)	2019.4.	5,500
포천	포천사랑상품권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4.	2,300
동두천	동두천사랑상품권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18.11.)	2019.2분기	2,000
가평	경기가평사랑상품권	가평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19.2.13.)	2007	1,200
연천	연천사랑상품권	연천군	연천군연천사랑상품권발행및 운영조례('19.3.예정)	2019.6.	4,653

〈표 3-6〉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3/3)

시군별 - 지역화폐명	인구 (만명)	구매한도 (월/연,만원)	할인율	발행형태
가평군 - 가평사랑상품권	6	30/360	상시 6%(한시 10%)	카드
고양시 - 고양페이	105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과천시 - 과천화폐 과천토리	6	40/480	상시 6%(한시 10%)	카드+지류
광명시 - 광명사랑화폐	32	40/480	상시 6%(한시 10%)	카드
광주시 - 광주사랑카드	37	40/400	상시 6%(미적용)	카드
구리시 - 구리사랑카드	20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군포시 - 군포애(애)머니	27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남양주시 - Thank You Pay-N	69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동두천시 - 동두천사랑카드	10	30/360	상시 6%(한시 10%)	카드
부천시 - 부천페이	84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수원시 - 수원페이	120	5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안산시 -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66	0/400	상시 6%(한시 10%)	카드+지류
안성시 - 안성사랑카드	18	50/500	상시 6%(한시 10%)	카드
안양시 - 안양사랑상품권	57	30/600	상시 6%(한시 10%)	카드+지류
양주시 - 양주사랑카드	22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양평군 - 양평통보	12	50/500	상시 10%(19년 한시)	카드
여주시 - 여주사랑카드	11	40/400	상시 6%(한시 9%)	카드
연천군 - 연천사랑상품권	4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오산시 - 오산화폐 오색전	22	30/360	상시 6%(한시 10%)	카드
용인시 - 용인와이페이	105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의왕시 - 의왕사랑상품권	16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지류
의정부시 - 의정부사랑카드	45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이천시 - 이천사랑지역화폐	22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파주시 - 파주페이	45	40/400	상시 6%(한시 10%)	카드
포천시 - 포천사랑상품권	15	30/360	상시 6%(한시 10%)	카드+지류
하남시 - 하머니	26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화성시 - 행복화성지역화폐	79	50/600	상시 6%(한시 10%)	카드

자료 : 경기도청, 유희증권(2019)

□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발행액 규모가 17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7〉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춘천	춘천사랑상품권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16.11.)	2017.1.	2,700
원주	원주사랑상품권	원주시	원주사랑상품권발행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018.7.	17,000
동해	동해사랑상품권	동해시	동해시동해사랑상품권 활성화조례(의회계류중)	2019.7월 ※조례제정후 확정추진	3,000
태백	태백사랑상품권	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2006.11.1.0.)	1999.10.	2,000
삼척	삼척사랑상품권	삼척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09.06.)	2000.12.	6,000
정선	정선아리랑상품권	정선군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13.3.)	2013.3.	1,100
철원	철원사랑상품권	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16.4	15,000
화천	화천사랑상품권	화천군	화천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관한조례 (09.7.20.)	1996.4	2,000
양구	양구사랑상품권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07.6.)	2007.7.	5,000
인제	인제사랑상품권	인제군	인제군인제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13.2.5.)	2013.8.	4,000
고성	고성사랑상품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12.7.)	2007.10.	1,500

□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의 발행액 규모가 2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8〉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청주	청주시재래시장 상품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03	-
충주	충주사랑상품권	충주시	충주시충주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용에관한조례	2019.7.	1,000
제천	제천화폐 모아	제천시	제천시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18.12.)	2019.3.	20,000
보은	결초보은 상품권	보은군	보은군결초보은상품권이용 활성화에관한조례	2005.1.	1,000
옥천	옥천사랑상품권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용에관한조례 ('18.9.28.)	2018.6.	2,000
영동	영동사랑상품권	영동군	영동군영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에관한조례 ('18.12.31.)	2019.2.	1,400
증평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증평군	증평사랑 으뜸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08.7.4.)	2004.5.	800
진천	진천사랑상품권	진천군	진천군진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14.12.29.)	2002.2.	1,200
괴산	괴산사랑상품권	괴산군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관한조례 ('17.12.29)	1996.5	3,500
음성	음성군지역사랑 상품권	농협	-	2011.1.	700
단양	단양사랑상품권	단양군	-	2005.3.	1,400

□ 충청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충청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5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논산시, 계룡시, 서천시가 발행액 규모가 300억원 규모로 높은 수준임

〈표 3-9〉 충청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천안	천안사랑상품권	천안시	-	2005.7.	-
공주	공주사랑 상품권	공주시	공주시 공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2008.1.	2,000
보령	보령사랑상품권	보령시	보령시보령사랑상품권관리및 운용 조례	1999.7.	1,000
아산	아산사랑상품권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2007.12.	500
서산	서산사랑상품권	서산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2019.9	1,000
논산	논산사랑상품권	논산시	논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하반기	3,000
계룡	계룡사랑상품권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08.10.20)	2005.9.	3,000
당진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09.5.	1,000
금산	금산사랑상품권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19.4.예정)	2019.7.	500
부여	부여사랑상품권	부여군	부여군부여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에관한조례	2012.6.	1,400
서천	서천사랑상품권	서천군	서천군 서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008.6.	3,000
청양	청양사랑상품권	청양군	청양군청양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2010.8.	550
홍성	홍성사랑상품권	홍성군	홍성군지역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용조례	-	500
예산	예산사랑상품권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1999.12.	580
태안	태안사랑상품권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운영및 관리조례	2001.11.	1,000

□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발행액 규모가 3,0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10〉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군산	군산사랑상품권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18.7.12)	2018.9.	300,000
김제	김제사랑상품권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2000.11.	2,500
장수	장수사랑상품권	장수군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005.7.	1,400
무주	무주사랑 상품권	무주군	무주군무주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18.12.18.)	2019. 8월	1,000
순창	순창사랑상품권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007. 6월	1,000
임실	임실사랑상품권	임실군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12.6.)	2012.12.	2,000
완주	완주 으뜸상품권	완주군	완주군완주 으뜸상품권관리 및 운용조례 ('14.12.26.)	2015.5.	3,000
고창	고창사랑 상품권	고창군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19.2.1.)	2019.7.	5,900
진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진안군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18. 12)	2019.4.	1,000
부안	부안사랑상품권 (가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	없음	1,000
남원	남원사랑상품권	남원시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18.11.)	2019.3.	1,500

□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9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군의 발행액 규모가 15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11〉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목포	목포화폐 (목포사랑상품권)	목포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19.1.)	2020.1월 (예정)	-
장흥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장흥군	장흥군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19. 7.(예정)	2,000
나주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시	나주시나주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관한조례('07.7.)	2007.9.	5,000
무안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	무안군무안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2019.7월 예정	1,000
보성	보성사랑상품권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용조례 ('19.5.예정)	2009. 5.	1,000
광양	광양사랑상품권카드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2008. 1.	10,000
진도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19.3.예정)	2019.7	2,000
순천	순천사랑상품권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18.04.	2,000
함평	함평사랑상품권	함평군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10.12.9)	2011.2.16.	7,300
영암	영암사랑상품권	영암군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09.8.)	2009.1.	3,500
곡성	곡성상품권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관리및 운영조례	300	2,000
완도	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2019. 7.	4,000
영광	영광사랑상품권	영광군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11.)	2019. 1.	5000
담양	담양사랑상품권	(사)담양군 상인협의회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5.01	1,000
화순	화순사랑상품권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4,100
구례	구례사랑상품권	구례군	19.7.	2013. 6.	500
강진	강진사랑상품권	강진군	강진군강진사랑상품권관리및운 영조례('12.12.)	2012.12	4,700
여수	여수상품권	여수시	여수시 여수(전통시장)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미정)	2000. 8.	2,700
	여수전통시장상품권	여수시	여수시 여수(전통시장)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미정)	2009. 1.	300
해남	해남사랑상품권	해남군	해남군해남사랑상품권 발행및운용조례('18.12.)	2019.3.	15,000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발행액 규모가 1,5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12〉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포항	포항사랑 상품권	포항시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2016.12.	150,000
김천	김천사랑 상품권	김천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07	3,000
구미	구미사랑 상품권	구미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0,000
영주	영주사랑상품권	영주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18.12.)	2019.7.	6,000
영천	영천사랑상품권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	2,500
군위	군위사랑상품권	군위군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06.2.	-
의성	의성사랑상품권	의성군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18.4.)	2018.8.	4,416
청송	지역사랑상품권	청송군	청송군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	-
영양	영양사랑상품권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06.11.08.)	2007.5.	1,000
영덕	영덕사랑상품권	영덕군	영덕군영덕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조례	2018.2.	3,000
청도	청도사랑상품권	청도군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 계획	2006.6	1,600
고령	고령사랑상품권	고령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17.9.)	1999.10.	2,000
성주	성주사랑상품권	성주군	19.6월 예정	2006.1.	3,500
칠곡	칠곡사랑상품권	칠곡군	칠곡군칠곡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10.12.)	2011.1.	8,000
예천	예천사랑상품권	예천군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19.상반기예정)	2019.7.	1,500
봉화	봉화사랑상품권	봉화군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2019.8.	5,000
울진	울진사랑상품권	울진군		2007.1.	

□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4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발행액 규모가 4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표 3-13〉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상품권명	발행 주체	조례명(제정시기/예정시기)	상품권 최초발행	발행수요 (2019)
도청	경남사랑상품권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2.8.)	2019.4.	20,000
창원	창원사랑상품권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2019.7.	10,000
김해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김해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17.12.22.)	2019.7.	1,000
거제	거제사랑상품권	거제시	거제시거제사랑상품권 관리및운영조례 ('07.01.08.)	2006	40,000
양산	양산사랑카드 상품권	양산시	양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 ('18.10.11)	2019.1.	36,000
의령	의령사랑상품권	의령군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2007.2.	1,200
함안	함안사랑상품권	함안군	함안군함안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 (2015.09.25)	2008.2.	1,000
고성	고성사랑상품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 ('18.6.14.)	2018.1.	15,000
남해	화전(花錢)	남해군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	3,000
하동	하동사랑상품권	하동군	하동군하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17.4.14.)	2000.1.	6,300
산청	산청사랑상품권	산청군	산청군산청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용조례	2000.5.	1,000
함양	함양사랑상품권	함양군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6.	1,000
거창	거창사랑상품권	거창군	거창군거창사랑상품권 발행및운용조례	2019.5	1,000
합천	합천사랑상품권	합천군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14.12.30)	2011.9.	2,900

4) 지역화폐 운영의 종합

- 국내의 지역화폐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보조화폐 형태로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역내 지불결제수단이든 지역상품권이든 그 형태와 무관하게 지역 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 아울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 및 판촉활동에서부터 상품권 할인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화폐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들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성남시의 사례에서처럼 복지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수당 수급권자에게 지역화폐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는 정책적 기저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제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지역화폐 공동체를 조직·운영하기 위함임(정치경제연구소, 2018)
 -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 지원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재정 투입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1) 개 요

□ 발행취지

- 역외 소비 감축 및 관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과 연계 가능한 시책 및 콘텐츠 구성안 도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 발급매체 : 모바일 App + 선불카드
 - 기명 카드: IC카드(일반시민, 사업자), 모바일 카드
 - 무기명 카드: 정액형 카드(인천 관내 농협지점에서 구입 가능)
- 유통지역 : 인천시 일원으로 한정
 - * 교통카드 기능은 전국 사용
- 가맹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을 제외한 전 사업장
 - * 등록된 가맹점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 모델 구축
 - *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 * 매출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주문배달, 쇼핑물, 마케팅 지원 등)
 -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및 가맹점 모집 등 서비스 환경 조성
 - 사용자와 가맹점의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 가맹점(소상공인) 및 사용자(인천시민) 혜택

-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매출 증대) 발행액 상당의 안정된 매출액 확보
 - (카드 수수료 절감) 0.3% 인하⇒ 연차별 제로화 추진
 - * 연매출 3억원 미만(0.8%→0.5%), 3억~5억원(1.3%→1.0%)
 -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주문배달, 인처너몰, 공유경제몰 등
 - (마케팅 지원) 위치 기반의 푸시 메시지 송출, 빅데이터 기반의 매출분석 및 맞춤형 시책개발 지원 등
- 인천시민의 자긍심으로 윤택한 가계경제 지원
 - (할인 혜택)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되는 현장 할인(3~7%) 혜택 수혜
 - (계획 소비) 선불 충전식 카드로서 계획된 소비 가능
 - * (예시) 외식카드 : 월별 정액을 충전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외식
 - 학생 용돈카드 : 월별 용돈을 충전하여 주고 소비패턴 분석 가능
 - (세(稅)테크) 연말정산시에 현금과 같은 30%의 소득공제
 - * 전통시장 사용시 40% 적용

〈표 3-14〉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p>① 카드수수료 절 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 미만 : 0.5% (0.3%절감) ▶ 3억~5억 : 1.0% (0.3%절감) ▶ 5억 이상 : 1.7% 	
<p>② 사 용 자 혜 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별 3%~7% 先할인 ▶ 소득공제 30%(전통시장 40%) 	
<p>③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배달(소상공인 대상) : 시중대비13~17%절감 ▶ 인처너몰(소상공인 대상) : 시중대비20%내외절감 ▶ 공유경제몰(인천시민 대상, '19년 시행예정) 	
<p>④ 통합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성카드 통합(비우체카드, 공공시설 회원증 등) ▶ 증충제카드(군·구·단체 등), 특화카드(축제연계) ▶ 챗봇(교육), 온라인예약, 스마트 물류 등 	

자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표 3-15〉 인천광역시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과 연계
발행매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카드(모바일 카드, IC카드), 무기명카드(정액형카드)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이상 인천시민(타지역민 및 외국인도 가능) - 타 지역민이 인천 방문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사용을 통한 할인 혜택 수혜 가능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사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일원 : 전체 사업장중 99.8%(17만5천여개 점포) 결제 가능 * 결제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300여개 점포(0.2%)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 - 가맹점에서 사용시 3~7% 할인을 즉시 적용 - 결제 시 할인금액은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류 영수증에는 상품 정가만 표기 - 결제 취소시 가맹점에 따라 카드 잔액 복구까지 3~5일 소요
결제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334개 점포(0.2%)
발급신청 (카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가입방법 * Android OS Kitkat 4.4버전, iOS 9.0 버전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 - 카드방법 : INCHEONer CARD 홈 화면 하단에 [내지갑]카드등록을 선택한 후, 카드 후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카드번호를 직접입력, 등록 완료된 카드는 '내 지갑'에서 확인 가능
정액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원, 10만원권 : 인천지역 농협은행 43개 지점에서 구입 가능 * 인천지역 농협은행 43개 지점 : 전담창구 운영중 - 그 외 금액의 정액권 구입 : 각종 위원회 수당 및 포상금 등 활용 가능 [ex) 7만원, 125,000원 등] · 구입처 : 12개 농협지점(인천시, 각 군·구 인근 농협지점)에서 구입, 공공기관카드(신한법인카드)로 결제 가능
특별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액의 4~15%를 캐시백(포인트) 및 할인액으로 제공 - 연말 정산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 모바일 앱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 관리 - 전화주문, 쇼핑물 등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발급시기	2017년 8월 31일 출시

□ 인천e음 특징

-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이 지역화폐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가맹점을 대규모 확보하는 등 정착되고 있음
- 앱+카드 형태로, 앱을 통해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것은 물론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결제액의 6%를 인센티브로 제공
- 기존의 지역화폐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에 지자체들이 도입한 지류상품권이나 모바일 형태 지역화폐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고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에 취약하거나, 결제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중장년층의 접근이 어렵고, 가맹점주가 따로 결제수단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 대두
- 인천e음은 신용카드 표준인 EMV 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악용을 원천차단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가맹점 확보에 유리
- 실제로 인천e음 가맹점수는 17만5,000개로 인천 지역점포 99.8%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9,100여개)의 20배에 달함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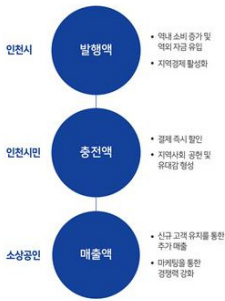
홍보 리플렛(전면)

인처너카드란?

INCHEONer 카드 APP에서 편리하게 충전하고 IC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

INCHEONer 카드 결제 시

- 지역 내 돈이 축적되어 유용합니다.
- 역외자금 유입으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이 튼튼해집니다.
- 지역 경기가 살아납니다.
-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지역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처너카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금 바로 INCHEONer 카드의 가맹점이 되면, 단골고객 확보와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INCHEONer 카드 가맹점 혜택

- 01. 각종 수수료 절감**
 - 주준배달 수수료 ZERO
 - 카드 수수료 0%
- 02. 모바일 APP을 통한 가맹점 홍보**
 - INCHEONer 카드 회원 대상 가맹점, 제품 홍보
 - 마케팅 PUSH 메시지 발송
- 03. 빠른 정산**
 - 쉽고 간편한 정산내역 확인

INCHEONer 카드 가입신청서 한장으로 OK! 귀 점포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세요!

- 가맹점이 정하는 할인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
- INCHEONer 카드 모바일 앱을 통한 가맹점 홍보
- 지역특화 프로모션을 통한 매장 홍보 극대화
-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가맹점 홍보는 물론 인천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채널 제공
- 매칭이음 고객의 거래내역 및 소비패턴을 활용한 마케팅

인처너카드로 가치소비 실천

지역사랑과 가치소비, INCHEONer 카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INCHEONer 카드 사용자 혜택

- 01. all benefits, INCHEONer**
 - 연회비 없이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
 - 인천 관내 가맹점 결제 즉시 할인
 - 체크카드와 동일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02. all values, INCHEONer**
 -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
 - 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 지역사회 공헌
- 03. all simple, INCHEONer**
 - 익숙하고 안전한 IC카드와 편리한 모바일 APP의 연동
 - 카드 신청, 충전부터 이용내역 관리까지 편리한 앱 서비스

가치소비의 시작



홍보 리플렛(후면)

인처너카드 사용방법



모바일 APP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관리, 안전한 IC결제

- INCHEONer 카드 앱에서 카드 신청
- 앱에 신용카드 등록
- 원하는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연계통시 충전
- 손쉽게 카드잔액과 이용내역, 할인받은 금액 확인

결제서비스

- 결제 즉시 할인
- 안전한 결제
- 교환가능

공공서비스

- 복지 무우치
- 각종 수당 지급
- 공공 시설 확충용

인천시와 코나이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행복공동체
INCHEONer 카드로
가능합니다.

INCHEONer? 인천에 살 거리는 사랑을 생각하는 소비자

인천사람의 실천
INCHEONer
카드

인천 시민의 가치 소비는
INCHEONer 카드로 실천한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032,440,4212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ICOPA

2) 시책 연계 서비스

□ 각종 수당 지급

- 월정액 수당(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등) : 자동충전 기능 활용
 - 수당지급계좌를 인치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변경
 - 인치너카드 앱에서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하여 매월 수당금액 만큼을 인치너카드로 충전하여 사용
- 비정기적 수당(위원회수당, 포상금, 당직수당 등) : 정액권 구입
 - 농협 12개 지점에서 법인카드로 정액권 구입
 - 정액권을 수령자에게 지급 후 수령 확인서 첨부
- * 정액권 수령자는 인치너앱 가입후 정액권을 등록, 소득공제 신청후 사용 (인치너앱 가입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나, 무기명이므로 사용내역 확인 및 소득공제 불가)

□ 보조금사업의 운영비 지급 연계

- 보조사업자 : 법인명의로 INCHEONer CARD 발급 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카드에 충전하여 결제

□ 각종 시설 입장료 연계

- 해당 시설 : 지자체 운영 박물관, 체험장, 체육시설 등
- 연계 방법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등록 후 입장료 및 사용료 등 할인(3% 이상) 적용

□ 축제, 공연 등 행사 연계

- 행사 입장료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결제

- 행사장내 매장에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결제
 - 각 매장을 사전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하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결제 및 할인을 적용
-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 입장료 징구시 입장료+추가금액을 징구하여 추가금액에 해당하는 전자상품권을 지급
 - 방문객들에게 전자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행사장 내 또는 인근 매장 등 인천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 도모

□ 자녀용돈카드 사용

- 부모가 NCHEONer CARD를 발급 받아 자녀에게 제공
 - 부모 : 모바일 앱에서 카드충전이나 카드 이용내역 확인
 - 자녀 : INCHEONer CARD 사용(용돈사용, 교통카드 기능 등)
 ⇒ 부모가 모바일 앱에서 이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자녀용돈관리 및 조기 경제교육 가능
-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녀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자녀명의로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

3. 광주상생카드

1) 개 요

□ 발행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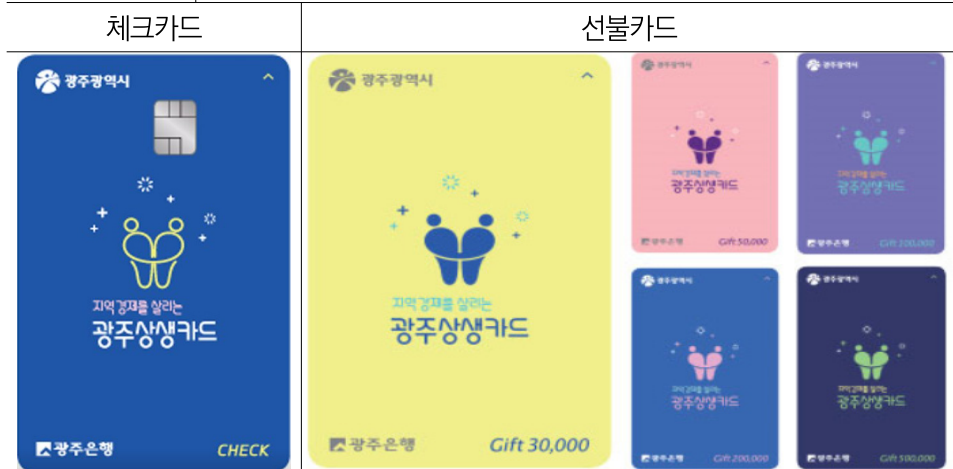
- 광주상생카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발행하고 지역 내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 및 선불카드임
- 별도의 가맹점 등록절차가 필요 없고,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광주 소재 업소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10% 특별할인' 효과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선착순 판매하고 있음. 판매 규모는 250억원으로 할인지원 예산 25억원이 소진 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추진중임
- 홍보 강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광주상생카드' 사용자들 인터넷 후기와 입소문으로 홍보되고 있어 앞으로 발행액과 사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주상생카드의 장점

- 별도의 가맹점 모집과 결제기기를 보급할 필요 없이 기존 가맹점과 결제로 사용 가능하며, 각종 정책수당과 연계가 용이하고,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각종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공
- 광주상생카드는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출시됐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 포상금 등 각종 정책수당과 연계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3-16〉 광주광역시: 광주상생카드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취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발행형태	- 기명식 체크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3•5•10•20•50만원 권종으로 발행)
사용범위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소
제외업종	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유흥업소, 본사 단일기맹점(스타박스 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발급신청	- 체크카드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및 모바일웹(m.kjbank.com)에서 발급 - 선불카드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만 구매 가능 (주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
구매한도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체크카드(광주상생카드 포함)로 구매 시 한도는 없으나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구매시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사용혜택	- 체크카드 : 야구장 입장료 및 놀이공원 할인, 각종 캐시백 포인트 제공, 후불교통카드 기능 무료 - 선불카드 : 구매액의 5~10% 할인(개인 한정, 1인당 월 50만원 구매 한도 내)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 30% (※ 신용카드 : 15%)
발급시기	2019년 3월20일 출시



2) 광주상생카드 세부사항

□ 운영대행사

- 광주은행

□ 발급신청 및 구매방법

- 광주상생카드 [체크]
 - 광주은행 영업점
 -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
- 광주상생카드 [선불]
 - 광주은행 영업점
 -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 사용방법

- 광주상생카드 [체크]
 - 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액 내에서 사용(일반체크카드 사용방법과 동일)
 - ※ 연회비 없음
- 광주상생카드 [선불]
 - 권면금액 내에서 사용 (3·5·10·20·50만원권) (재충전 가능/권면금액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 가능)

□ 이용가능 업소

- 광주광역시 소재 9만 여개 가맹업소(비씨카드 등록된 가맹점 주소 기준)
 - ※ 고속버스·철도·항공사·택시·이동통신 요금 등 업종은 가맹업소 주소와 상관없이 수도권 등에서도 이용 가능

□ 이용제한 업소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SSM, 유흥업소, 온라인 가맹점 (PG, 인터넷 Mall),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단일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업소(스타벅스 등) 등

※ 선불카드 이용 제한

-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업소(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 부분 취소 가능 가맹업소(항공권 등)

□ 기본 서비스

- 전통시장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 국제청 기준 전통시장 등록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서비스 제공

□ 오매 서비스

- 오매서비스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
- 오매 맛있네(슈퍼·편의점 업종): 이용금액의 5% 캐시백
 -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 오매 편하네(주유업종): 전 주유소 리터당 50원 캐시백
 -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 오매 편하네(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5% 캐시백
 - 월 최대 2천원 캐시백
- 오매 멋있네(이·미용업종): 이용금액의 5% 캐시백
 -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 오매 즐겁네(영화업종-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용금액의 5% 캐시백
 -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 오매 반값네(커피업종-엔제리너스, 드롭탑, 파스쿠치, 투썸플레이스):이용 금액의 5% 캐시백

- 월 2회, 건당 최대 3천원 캐시백

□ 오매 서비스 월간 통합 캐시백 한도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통합 캐시백 한도	1만원	2만원	3만원

□ 추가 서비스

○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3회 면제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

□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광주상생카드도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결제수수료 발생하나, 영세·중소상공인(카드 연매출 5억원 이하)들에게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

- 3억 이하 0.5%(0.8%), 3억 초과~5억 이하 1.0%(1.3%), 5억 초과~10억 이하 1.1%(1.4%) 10억 초과~30억 이하 1.3%(1.6%)

※ ()는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신용카드보다 0.3% 낮음

※ 익월 10일쯤 카드대금 통장 계좌로 '광주상생카드'내역으로 지급

□ 구매할인

- 할인가간: 2019년 광주광역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할인대상: 선불카드 구매자(법인 및 재충전자 제외)
- 할 인 율: 권면 금액의 5%
- 1인당 할인가능 구매 한도: 월간 50만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기명등록 시)

- 기명등록은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ank.com),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앱)에서 가능

□ 사용업소 혜택

-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의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 영세·중소·일반(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3. 대덕구 : 대덕e로움

1) 개 요

□ 도입 배경

- 대덕구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인구·면적·재정규모가 가장 작으며, 산업 구조도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2018년 국민연금공단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은 2,925천원으로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음에도 지역평균소득 월액은 1,230천원으로 5개 자치구 중 3위
-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 교육여건 부족, 낙후된 도시 이미지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발전이 더딘 실정임
- 이에 대덕e로움(지역화폐)을 발행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입하게 되었음
 - 소비촉진⇒생산증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내생적 지역발전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대덕e로움(지역 화폐)은 대덕구의 경제활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발행 의의

- 대덕e로움이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이며, 대덕e로움은 대덕구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발행 및 구매

- 발행은 공식 출시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7월 2일부터)을 거쳐, 2019년 7월 출시
- 대덕e로움은 종이형 상품권이 아닌 IC카드 형태의 선불식 전자카드로 충전형과 기프트형으로 발행
- 선불식 전자카드로 발행됨에 따라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 어디거나 사용이 가능하여 가맹점 모집이 필요 없고, 할인보전금은 환불이 안되게 설계함에 따라 카드 갱 문제의 소지도 없고, 발급된 카드로 계속 충전해 사용하기에 발행비가 덜 소요됨
- 2019년 발행 목표액은 100억원이며, 2020년부터는 지역화폐 사용추이에 따라 상향할 예정임
 - 발행액 100억원의 의미는 예산액이 아니라 할인보전금(최대 10%, / 상시 6%, 명절·출시 등 특판 시 10%)을 지원받아 구매(충전)하는 대덕e로움의 총 발행 규모로, 할인보전금이 전부 소진될 경우에는 할인 없이 지역화폐를 구매(충전)하게 됨
-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 앱, 판매대행점(대덕구에 소재한 하나은행, 신한)에서 구매 가능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구매자격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가진 만 14세 이상 대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덕e로움 판매대행점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구매 가능함

□ 할인 구매

- 시행규칙에 따라 대덕e로움 구매자에게 상시 6%, 출시기념·명절(설, 추석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10일 후까지) 등 특판 시 10% 할인 혜택

- 발행 목표액 100억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할인을 없이 대덕e로움을 구매해야 함
- 조례에 따라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500만원으로 할인 구매가 제한되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은 별도의 구매한도가 없으므로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음
- 개인 구매한도를 둔 이유는, 발행액 규모(100억원)가 정해져 있기에 일부 사용자만 할인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대덕e로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할인 이외의 혜택은 소득공제 신청 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사용처

- 대덕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다른 자치구 사용 불가),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단말기(IC카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학원, 미용실, 커피숍, 식당, 노래방, 피씨방, 당구장, 주유소, 전통시장 등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대규모·준대규모점포(관내 4개소), 유흥업소(단란주점 등), 도박장,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 * 준대규모점포(4개소): 롯데수퍼(신탄진), GS수퍼(신탄진), 홈플러스익스프레스(송촌점), 이마트에브리데이(법2동)
- 같은 편의점이나 주유소라 하더라도 직영점의 경우 사용 시 제한될 수 있음

□ 가맹점 수수료

- 가맹점(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은 체크카드에 준하는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는 0.5%, 3~5억원의 경우 1%,

5~10억원은 1.1% 수수료가 있음

- 다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000만원 (2019년에 상향됨)까지 환급받기에 카드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음
-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5% 이내), 추가 포인트 적립 등의 독자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 특별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특별가맹점 신청서에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덕구(에너지경제과)에 제출

The image is a promotional banner for the 'Dae-deok e-room' (대덕e로움) program. It features the program's logo in blue and pink, with the text '2019년 7월 5일 출시!' (Launched July 5, 2019). Below the logo are four circular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categories: '식당·카페' (Restaurant/Cafe), '시골 물 제품' (Rural Water Products), '신규 공채' (New Public Housing), and '학원비 공제' (Education Fee Deduction). To the right, two blue credit cards are shown, one with a cartoon character. At the bottom, a blue bar contains the text '알인구매 (출시·명절 등 10%, 상시 6%) + 소득공제 30%' (Special Purchase (10% for launch/festivals, 6% regular) + 30% Income Tax Deduction).

2) 지속가능한 유통 활성화 방안

- 대덕e로움을 이용한 수익창출, 복지수당 지급, 민간협업체 구성, 주기적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노력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1. 기본방향
2. 도입방안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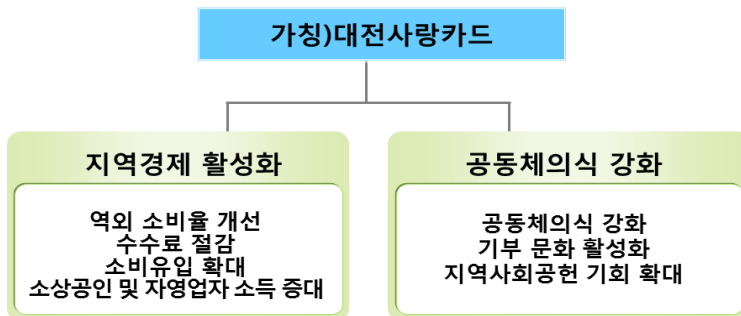
4장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1. 기본방향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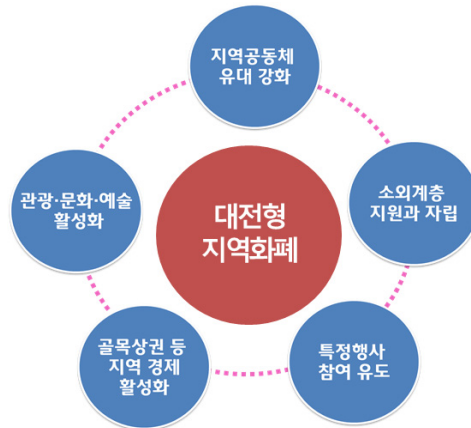
-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환경조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준비 필요
- 지역화폐가 정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초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던 소비를 지역 내로 이끌어 내고, 외지의 소비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이 중요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사용해야 우리 동네가 살아난다'는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역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대덕구에서 '대덕 e로움'을 발행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거점상권으로 자금의 '쏟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등 기초 연구가 필요

<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기본목표 >



□ 지역화폐 확산 기반 조성

- 지역에 맞는 분명한 색깔로 뚜렷한 특색 설정이 필요
 -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소외계층 지원, 자립, 관광, 문화, 레저, 예술 활성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특정행사 참여 유도 노력



- 절반 이상 성공조건으로서 지역주민의 인지도 제고를 우선시 함
 - 전문가를 모으고 토론 및 교육을 통해 ‘지역화폐는 철저히 지역을 위한 화폐’ 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화폐 도입은 혁신운동으로서의 이념적 접근보다는 지역정책의 사업적 접근이 필요
 - 돈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돈 이상의 의미를 담으려는 지역 화폐 운동은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음
- 지역민의 지역화폐 사용 동기 등 마케팅 필요
 - 지역화폐를 사용할 분명한 이유, 혜택, 할인 적용이나 사은품 제공 등 방법이 다양할수록 소비욕구를 유발
- 지역화폐의 가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이익 창출
 - 지금까지 지역 화폐는 가치, 즉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뜻으로 호소했으나, 지속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이끌려면 이익을 창출해야 함

2. 도입 방안

□ 도입 목표

- 기본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아울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취를 통하여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하며, 로컬푸드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연결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으로 이끌어 냄

□ 발행규모

-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범운영 및 안정화를 통한 본격적인 확장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1단계 : 시범 운영 단계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연간약 2,500억원 규모로 발행 운영
- 2단계 : 안정화 단계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연간 3,500억원 규모로 발행 운영
- 3단계 : 본격적인 확장단계로 지역화폐의 활용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발행 운영

□ 가칭‘대전사랑카드’도입 방안(안)

- 대전시 차원의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모형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가칭)‘대전사랑카드’운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가능한 범용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공동체 조직과의 연계 등 운영방식과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4-1〉 대전광역시 ‘가칭) 대전사랑카드’ 도입 방안(안)

구 분	주요 내용
관련근거	운영 조례 제정
발행목적	-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보호
시행시기	2020년
재정조달	일반회계
화폐형태	카드, 앱
발행액 규모	- 시범운영 단계 : 2500억원 - 안정화 단계 : 3500억원 - 확장 단계 : 5000억원 이상
할인혜택	- 세제혜택(3~7%〈인천기준〉) - 할인혜택 : 평상시 6%, 낙후지역 10%
활용예시	- 복지 활용 : 성남시(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 등) - 지역축제 활용 : 화천군(지역 축제에 녹이다) - 문화예술공연 활용 : 지역내 문화예술공연 참여시 혜택

□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구축

-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실무 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 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의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운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조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확산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인력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한 부분이 지역화폐 운용을 위한 실무공간에 대한 지원임
- 대전광역시 공동체 정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공간지원 마련을 통해 지역화폐의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가칭) 대전사랑카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지원

- 지역주민의 '가칭) 대전사랑카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가칭) 대전사랑카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가칭) 대전사랑카드'의 이용 방법 간소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는 '가칭) 대전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한 시기에 '가칭)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의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에 외부 자원에 의존해야 하고, 외부자원이 사라질 때에는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 현상이 되풀이 될 것임

□'가칭' 대전사랑카드' 서포터즈 육성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지역화폐학교 개설)

- '가칭'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 시민 홍보 능력을 갖춘 다수의 서포터즈를 육성하기 위한 단기적·체계적 교육을 위한 지역화폐학교를 운영함
 - 교육기간 : 회당 15주
 - 장 소 : 대전세종연구원
 - 교육대상 : 100여명(대전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대전소상공인연합회
 - 운영주체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
-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이해, 가칭) 대전사랑 카드'의 특징, 지역화폐 관련 정책 현황, 지역화폐의 사례와 유형,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전략적 홍보 등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지원

- 결제수수료 제로화(0%) 추진
 - 수수료 지원 예산 투입
 - '가칭' 대전사랑카드'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기타 수익 및 기금으로 지원
- 모바일 마케팅 지원

- 앱을 통한 모바일 마케팅(Push 메시지), 맞춤형 마케팅 방안 도출
(Big Data 분석)
- 소상공인만을 위한 기금 별도 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지원 등)

□ 대전문화예술 시설 내 공연 20% 할인

- 대상 :‘가칭) 대전사랑카드’소지자
- 장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공연장 및 전시장
- 혜택 :‘가칭) 대전사랑카드’ 소지시 20% 할인
* 공연 당일‘가칭) 대전사랑카드’ 제시, 1인 2매에 한함

□‘가칭) 대전사랑카드’전자상품권 경품 이벤트

- 대상 :‘가칭) 대전사랑 전자상품권’5만원 이상 사용자
 - 응모기회 : 5만원 이상 1회 , 50만원 이상 2회, 100만원 이상 3회,
200만원 이상 4회 - 선정: 전자식 추첨을 통해 사전 선정
 - 경품내역(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화폐는 공간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지역의 자본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며,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등과 함께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광역지자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음
- 아울러 2018년 말 정부는『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계획을 발표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화폐의 개념 및 동향 등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을 탐색하고,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세부적으로는 대전지역이 사전에 이러한 지역화폐 도입시 예상되는 각종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화폐 관련 이론적 검토와 지역화폐 발행 사례 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제시 등임
- 본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진행방향과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헌검토는 지역화폐의 개념 및 성격, 지역화폐의 장점 및 형태, 지역화폐의 내발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을 정리하였음
- 사례조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 인천사랑 전자상품권과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 발행 사례를 살펴보았고,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인 대덕구의 대덕e로움의 주요사업을 검토함
- 전문가 콜로키움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였음

< 지역화폐의 개념 및 특징 >

□ 지역화폐의 개념

-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히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화폐로, 지역내의 부(Wealth)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내수 증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화폐의 장점

- 가구 소득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 소비 주체 간 협동 결성(공동체 활성화)
- 내생적인 지역발전 증대

□ 지역화폐의 형태

- 지역화폐의 형태는 크게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류형 보다 카드형과 모바일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음

□ 지역화폐의 내생적 발전 및 지역경제 영향

- 내생적 발전, 지역의 자원 활용과 순환
-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킴에 따라 지역경제에 (+)효과를 유발시키게 되고, 또한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의해 발생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는 지역 내 소비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발시키게 됨

□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동향과 발행 현황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 '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발행 규모의 4%를 지원할 예정

- '19년 3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총 69개(광역시 2개, 기초 67개)이며, '19년 도입 예정 지자체는 71개로 총 발행 지자체는 140곳으로 확대될 전망
- 지역화폐 발행 금액 면에서도 2016년 1,168억원, 2017년 3,063억원, 2018년 3,712억원, 2019년 1조8256억원으로 크게 증가

□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으로 광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부산 동구, 인천, 광주, 대전 대덕구, 울산, 세종시가 발행 운영
-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3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발행액 규모가 1,116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발행액 규모는 17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의 발행액 규모는 2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충청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5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논산시, 계룡시, 서천시가 발행액 규모는 3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발행액 규모는 3,0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9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군의 발행액 규모는 15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발행액 규모는 1,5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14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발행액 규모는 4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음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개요

목적 및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과 연계
발행매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카드(모바일 카드, IC카드), 무기명카드(정액형카드)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이상 인천시민(타지역민 및 외국인도 가능) - 타 지역민이 인천 방문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사용을 통한 할인 혜택 수혜 가능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사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일원 : 전체 사업장중 99.8%(17만5천여개 점포) 결제 가능 * 결제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300여개 점포(0.2%)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 - 가맹점에서 사용시 3~7% 할인을 즉시 적용 - 결제 시 할인금액은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류 영수증에는 상품 정가만 표기 - 결제 취소시 가맹점에 따라 카드 잔액 복구까지 3~5일 소요
결제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334개 점포(0.2%)
발급신청 (카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가입방법 * Android OS Kitkat 4.4버전, iOS 9.0 버전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 - 카드방법 : INCHEONer CARD 홈 화면 하단에 [내지갑]카드등록을 선택하신 후, 카드 후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카드번호를 직접입력, 등록 완료된 카드는 '내 지갑'에서 확인 가능
정액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원, 10만원권 : 인천지역 농협은행 43개 지점에서 구입 가능 * 인천지역 농협은행 43개 지점 : 전담창구 운영중 - 그 외 금액의 정액권 구입 : 각종 위원회 수당 및 포상금 등 활용 가능 [ex) 7만원, 125,000원 등] · 구입처 : 12개 농협지점(시, 경제청, 각 군·구 인근 농협지점)에서 구입, 공공기관카드(신한법인카드)로 결제 가능
특별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액의 4~15%를 캐시백(포인트) 및 할인액으로 제공 - 연말 정산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 모바일 앱에서 간편한 충전과 잔액관리 - 전화주문, 쇼핑물 등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발급시기	2017년 8월 31일 출시

□ 광주상생카드

목적 및 취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발행형태	- 기명식 체크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3•5•10•20•50만원 권종으로 발행)
사용범위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소
제외업종	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유흥업소, 본사 단일가맹점(스타박스 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발급신청	- 체크카드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및 모바일웹(m.kjbank.com)에서 발급 - 선불카드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만 구매 가능 (주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
구매한도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체크카드(광주상생카드 포함)로 구매시 한도는 없으나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구매시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가능
사용혜택	- 체크카드 : 야구장 입장료 및 놀이공원 할인, 각종 캐시백 포인트 제공, 후불교통카드 기능 무료 - 선불카드 : 구매액의 5~10% 할인(개인 한정, 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 내)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 30% ※ 신용카드 : 15%
발급시기	2019년 3월20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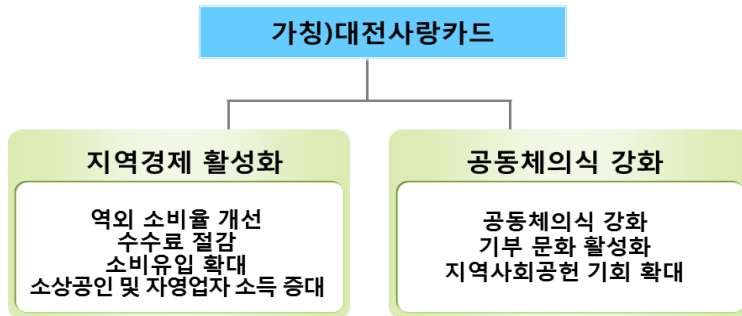
□ 대덕e로움

- 대덕e로움(지역화폐)을 발행하여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입
- 대덕e로움은 종이형 상품권이 아닌 IC카드 형태의 선불식 전자카드로 충전형과 기프트형으로 발행
- 대덕e로움 구매자에게 상시 6%, 출시기념·명절(설, 추석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10일 후까지) 등 특판 시 10% 할인 혜택
- 부가혜택은 소득공제 신청 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 기본목표

- 지역화폐가 정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지역 밖에서 이루어져 온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이 중요함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역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 필요
 - 현재 대덕구에서 '대덕e로움'을 발행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거점상권으로 자금의 '쏟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등 기초 연구가 필요



□ 지역화폐 확산 기반 조성

- 지역에 맞는 분명한 색깔로 뚜렷한 특색 설정 필요
- 성공의 절반 이상의 조건이 지역주민의 인지도 제고 우선에 있음
-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 혁신운동의 방향성은 이념적 접근보다는 지역 정책적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지역민의 지역화폐 사용 동기 등 마케팅 필수적
- 지역화폐의 가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이익 창출이 선결 과제

□ 도입 목표

- 기본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취를 통하여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하며, 로컬 푸드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연결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함

□ 발행규모

-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범운영 및 안정화를 통한 본격적인 확장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임
- 1단계 : 시범 운영 단계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연간약 2,500억원 규모로 발행 운영
- 2단계 : 안정화 단계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연간 3,500억원 규모로 발행 운영
- 3단계 : 본격적인 확장단계로 지역화폐의 활용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5,000억원 규모로 발행 운영

□ (가칭)‘대전사랑카드’도입 방안(안)

- 대전시 차원의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모형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가칭)‘대전사랑카드’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운영 조례 제정
발행목적	-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보호
시행시기	2020년
재정조달	일반회계
화폐형태	카드, 앱
발행액 규모	- 시범운영 단계 : 2500억원 - 안전화 단계 : 3500억원 - 확장 단계 : 5000억원
할인혜택	- 세제혜택(3~7%〈인천 기준〉) - 할인혜택 : 평상시 6%, 낙후지역 10%
활용예시	- 복지활용 : 성남시(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 등) - 지역축제 활용 : 화천군(‘지역 축제에 녹이다’) - 문화예술공연 활용 : 지역내 문화예술공연 참여시 혜택

2. 정책제언

□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구축

-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실무 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운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조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확산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인력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한 부분이 지역화폐 운용을 위한 실무공간에 대한 지원임
- 대전광역시 공동체 정책 차원에서 공간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역화폐의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가칭) 대전사랑카드’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지원

- 지역주민의 ‘가칭) 대전사랑카드’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칭)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가칭) 대전사랑카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가칭) 대전사랑카드’의 이용 방법 간소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는 ‘가칭) 대전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한 시기에 ‘가칭)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의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에 외부 자원에 의존해야 하고, 외부자원이 사라질 때는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 현상이 되풀이 될 것임

□ '가칭' 대전사랑카드' 서포터즈 육성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지역화폐학교 개설)

- '가칭' 대전사랑카드' 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 시민 홍보 능력을 갖춘 다수의 서포터즈를 육성하기 위한 단기적, 체계적 교육을 위한 지역 화폐학교를 운영
 - 교육기간 : 회당 15주
 - 장 소 : 대전세종연구원
 - 교육대상 : 100여명(대전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대전소상공인연합회
 - 운영주체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
-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이해, 가칭) 대전사랑 카드'의 특징, 지역 화폐 관련 정책 현황, 지역화폐의 사례와 유형,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전략적 홍보 등

□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지원

- 결제 수수료 제로화(0%) 추진
 - 수수료 지원 예산 투입
 - '가칭'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기타 수익 및 기금으로 지원

- 모바일 마케팅 지원
- 앱을 통한 모바일 마케팅(Push 메시지), 맞춤형 마케팅 방안 도출
(Big Data 분석)
- 소상공인만을 위한 기금 별도 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지원 등)

□ 대전문화예술 시설 내 공연 20% 할인

- 대상 : '가칭' 대전사랑카드' 소지자
- 장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련 공연장
- 혜택 : '가칭' 대전사랑카드' 소지시 20% 할인
* 공연 당일 '가칭' 대전사랑카드' 제시, 1인 2매에 한함.

□ '가칭' 대전사랑카드' 전자상품권 경품 이벤트

- 대상 : '가칭' 대전사랑 전자상품권' 5만원 이상 사용자
 - 응모기회 : 5만원 이상 1회 , 50만원 이상 2회, 100만원 이상 3회,
200만원 이상 4회 - 선정: 전자식 추첨을 통해 사전 선정
 - 경품내역(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2017),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 고태호(2012), 제주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효과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포럼, 제42호.
- 김민정(2011),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 통권26호: 116-148.
- 문진수(2015), 은평구 지역화폐 유통방안 연구 , 사회혁신공간 데어, 은평구청.
- 윤창호(2018),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과 방향, 한살림재단 생명·협동 연구 최종보고서, 한 살림재단.
- 이수연(2014a),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분석, 새사연 연구원.
- 이수연(2014b),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새사연 이슈진단.
- 정치경제연구소(2018), 지역공동체운동과 지역화폐.
- 조재욱(2013),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 경제의 가능성 시탐”, 비교민주주의연구 , 9(1): 37-68.
- 최준규 외(2016),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 최준규(201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 한성일(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연구, 제 21권 제 4호.

부 록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15 조례 제 51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광주사랑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광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권면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의 제휴 가맹점 중 제2항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가맹점을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3조(광주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이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은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04-23 조례 제 59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취를 통하여 인천시 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 등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 ②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은행, 점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대행점의 지정과 취소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행점은 정액형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금액 중 규칙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맹신청서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일 경우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판촉) 가맹점은 매출 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대행점 및 가맹점이 제7조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보 등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시장은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3장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제13조(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권한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① 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7조(자료 제출) 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시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입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운영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지도·감독 결과 주요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1명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28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2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04-23 조례 제597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